

# 미래에셋증권 외화 발행어음 약관

제정 2021. 06. 01.

개정 2023. 10. 12.

## 제 1 조(약관의 목적)

이 약관은 고객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간의 미래에셋증권 외화 발행어음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(용어의 정의)

외화 발행어음이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1년 이내의 약정된 수익률로 회사가 외화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한다.

## 제 3 조(거래성립 등)

① 외화 발행어음을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은 고객명의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 외화 자금을 입금한 후 발행어음 매수를 신청하면, 회사는 총 한도내에서 외화 발행어음을 발행하고 해당 발행어음의 발행금액, 발행일, 만기일, 약정수익률을 전산원장에 기록함으로써 거래가 성립한다.

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고객에게 별도의 실물은 교부하지 않으며, 제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산원장에 당해 외화 발행어음 상세정보를 기록함으로써 발행 및 교부한 것으로 한다.

## 제 4 조(가입금액)

외화 발행어음의 최소가입금액 및 가입한도에 대해서는 회사가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른다.

## 제 5 조(최장발행기간 및 약정기간)

① 외화 발행어음의 가장발행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르며,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약정기간을 선택하거나 그 범위 내에서 약정만기일을 정할 수 있다.

②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발행어음의 약정만기일이 도래한 때 당해 외화 발행어음은 자동으로 계좌에 현금지급된다. 약정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계좌에 현금지급된다.

#### 제 6 조(약정수익금의 지급)

① 수익금 지급 방법은 만기일시지급식이며, 회사는 해당 외화 발행어음의 약정만기일이 도래한 때 고객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며, 고객이 어음을 중도상환할 때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중도상환에 따른 수익률에 의하여 산출된 수익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일수 산정은 매수일부터 상환 전 일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다. 다만, 수익금을 원화로 환산(만기일 또는 중도상환일의 매매기준율)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므로, 일부 지급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.

③ 약정수익금 산정시 최소매매단위 미만은 절사하며, 최소 매매단위는 별첨에서 정하는 통화별 기준에 따른다.

#### 제 7 조(중도상환)

① 고객이 만기일 전에 어음의 상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초 약정한 수익률과는 별도로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중도상환 수익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한다.

② 제 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다. 다만, 수익금액을 원화로 환산(만기일 또는 중도상환일의 매매기준율)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므로, 일부 지급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.

③ 약정수익금 산정시 최소매매단위 미만은 절사하며, 최소 매매단위는 별첨에서 정하는 통화별 기준에 따른다.

## 제 8 조(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)

고객은 외화 발행어음을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질권(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)을 설정할 수 없다.

## 제 9 조(약관의 변경 등)

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

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 "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.

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 10 조(관계법규등 준수)

고객과 회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, 한국금융투자협회

업무규정 등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등(이하 "관계법규 등"이라 한다)을 준수한다.

#### 제 11 조(분쟁조정)

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#### 제 12 조(관할법원)

- ① 발행어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제 13 조(관계법규 등 준용)

-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관 또는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,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.
-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'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'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되며, 그 밖에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될 회사의 다른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적용된다.

이 약관은 202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약관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]

제6조 제3항, 제7조 제3항의 "별첨에서 정하는" 통화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.

USD: 매매 단위 0.01\$

※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